

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 (☐ 전업 ☐ 겸업)				처리기간 15일
신 고 인	①상호 및 대표자의 성 명 (주민등록번호)			②설 립 일 자
	③주 된 사 무 소 소 재 지			④전 화 번 호 (FAX, E-mail)
	⑤사 업 내 용	1) 2) 3)		
	⑥ 연 간 매 출 액	백만원	⑦총종업원수	명
	⑧ 신 고 인 유 형	☐ 대기업 ☐ 중소기업 ☐ 기 타		
신 고 사 항	⑨명 칭			
	⑩대 표 자 성 명			
	⑪소 재 지			⑫전 화 번 호 (FAX, E-mail)
	⑬주 요 활 동	1) 2) 3)		
	⑭기 술 부 문	등 개 부문		
	⑮전 문 분 야	등 개 분야		
	⑯기 술 인 력	총 계 ()명	기술자격자	기 술 사() 기 사() 산업기사()
		학 력 자	박 사 () 석 사 () 학 사 () 전문학사()	
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 년 월 일 신고인 (인) 협회장 귀하				

210mm×297mm

(신문용지 50g/m²(재활용품))

구비서류

1. 영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

○자격 및 학력 : 국가기술자격증 사본,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

○기술인력보유 :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

○경력사항 : 전 직장 경력증명서(경력자에 한합니다)

2.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구조직도(영 제3조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겸업의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기구조직도)1부

3.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직원현황(영 제3조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겸업의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직원현황) 1부

※ 비 고 : ⑭ 및 ⑮란은 영 제2조의2 및 영 별표 1 "기술부문 및 전문분야별 엔지니어링기술"에 따라 기재합니다.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제3쪽)

